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5. 12. 18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17일

나. 제출자 : 권영식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
제7차 사회건설위원회(2015.12.9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권영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노인의 가장 중요한 활동과 생활의 공간인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, 취미활동,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 활동 등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원계획 수립 및 경로당 실태조사(안 제5조, 제11조)
- 운영비 및 교육·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(안 제6조)
- 경로당 보조금 정산 및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·감독 실시
(안 제7조, 제8조)
- 결연사업 및 안전점검 실시(안 제9조,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태선)

○ 본 조례안은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에 있어서 접근성과 이용 빈도에서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해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,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지원계획에는 운영비 등 지원 사항,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,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중식 지원용 양곡, 냉·난방비 및 교육·여가 프로그램 지원, 물품 및 시설 유지 관리 등을 시설 규모와 이용인원 및 시설형태,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,

경로당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실태를 지도·감독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하여 매분기 구지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「노인복지법」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운영비를 환수하거나 지원을 축소하는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노인여가 복지시설 중 가장 대중적인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하여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상위법령의 목적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 그동안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세대에 대해 앞으로는 단순한 경로당 지원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(권영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년 11월 일

발 의 자 : 권영식 의원 외 7명

1. 제안이유

노인의 가장 중요한 활동과 생활의 공간인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, 취미활동,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 활동 등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계획 수립 및 경로당 실태조사(안 제5조, 제11조)
- 나. 운영비 및 교육·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(안 제6조)
- 다. 경로당 보조금 정산 및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·감독 실시
(안 제7조, 제8조)
- 라. 결연사업 및 안전점검 실시(안 제9조, 제10조)

3. 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, 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,
제47조(비용의 보조)

-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5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(2015. 11. 9 ~ 11. 16) : 없음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르신 복지증진 및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노인”이란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경로당”이란 「노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구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
2.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
3.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
4.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6조(보조금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운영비
2. 중식 지원용 양곡
3. 냉·난방비
4. 교육·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
5.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
6. 경로의 달 위문금 지원
7.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, 이용인원, 시설 형태,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 건강증진 및 교육·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

제7조(정산 등)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(운영비 및 냉·난방비 등을 말한다)을 지원 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·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대한노인회 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도·감독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·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시설 및 회원관리, 운영비 사용·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
2.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3.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

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·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,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.

1. 수입·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
2.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
3. 체크카드 미사용
4.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5.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
6. 그 밖에 법령,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

제9조(결연사업)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0조(안전점검)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·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관계규정을 준수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지원·운영 중인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·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.